

# 일본의 가축사육위생관리 지침서(I)

문진산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수의학박사  
김덕원 / 삼양에니팜

최근 농림부에서는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축장, 우유·육가공장, 배합사료 공장에 이어 사육단계에서도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사육농장에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를 파악, 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중점관리하는 사육단계의 HACCP를 2006년 돼지농장을 시작으로 2007년 젖소, 2008년 한우, 2009년 산란계, 2010년 육계농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제정한 가축의 생산단계인 농장에서의 위생관리 지침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1. 사육위생관리기준 제정의 취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가축의 생산단계인 농장에서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전염성 질병 원인체의 오염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즉, 가축의 전염성 질병은 가축의 소유주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그 발생을 예방 할 수 있으므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사육과 관련되는 위생관리 방법 및 준수해야 할 기준(사육위생관리기준)을 정하였다.

또한, 사육위생관리기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분할지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의 4의 규정에 근거해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는 사람에 대해 기한을 정하고 가축의 사육과 관련되는 위생관리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 권고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고 해당 권고와 관련되는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사육위생관리지침은 가축 전염병예방법 시행

규칙 제21조에 규정된 사육위생관리기준에 대해서 가축 소유주에 의한 해당 기준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지도 및 상담을 실시하는데 유의해야 할 사항을 나타내어 상담 및 지도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 ○ 가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

1. 축사 및 기구의 세척 또는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작업자의 옷과 신발 등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
2. 축사에 출입하는 사람은 손, 작업복과 신발 등에 대해서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원인체가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독 그 외의 조치를 취하는 것.
3. 사료 및 물에 가축 및 쥐, 들새 등의 야생동물의 배설물 등이 혼입하지 않게 노력하는 것.
4. 다른 농장 등으로부터 가축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축을 도입함으로써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원인체가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가축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 할 때까지 다른 가축과 접촉시키지 않게 하는 것.

5. 다른 농장 등에서 출입자가 함부로 축사에게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농장 등을 출입한 차량이 농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해서 소독에 노력하는 것.
6. 축사의 지붕 또는 벽면에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리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창문, 출입구 등의 개구부에 그물망과 그 외의 설비를 마련하여 쥐, 들새 등의 야생동물 및 파리, 모기 등의 해충 침입의 방지에 노력하고, 필요에 따라서 제거하는 것.
7. 가축을 다른 농장 등에 출하하는 경우에 해당 가축이 이동함으로써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원인체가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가축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
8. 가축의 이상상태를 가능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가축의 건강관리에 노력하고, 이상이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동물진료소의 진료를 받고 지도를 요구하는 것.
9. 가축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과밀상태로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것.
10. 가축 전염성 질병 발생의 예방에 관한 지식의 습득에 노력하는 것.

## 2. 사육위생관리기준과 관련하여 상담 및 지도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

사육 위생관리 기준은 일상의 적절한 위생 관리의 이행에 의한 가축의 전염성 질병 발생

예방을 통해서 생산단계에서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가축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의 개선을 도모해 가는 것이 중요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 4의 규정에 근거하는 권고에 앞서 적절히 상담 및 지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에 사육 위생관리 기준으로 10개의 항목이 정해져 있지만 상담 및 지도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가축의 종류 및 용도, 사육형태, 사육규모, 축사의 구조 등을 확인한 다음, 보다 청결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에 임해서 상담 및 지도를 한다.

상담 및 지도에 의해서도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발생 예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경우로 식별되었을 경우에 행정분할지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의 4의 규정에 근거하는 권고 및 명령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

또한, 사육위생관리기준의 준수 상황의 확인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제5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농장에서의 현장검사 등은 가축 방역원과 행정분할지사에 의해서 권고 및 명령에 의해서 각각 행해지지만, 기준에 근거하는 위생관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상담 및 지도에 대해서는 종전부터 행해지고 있는 위생관리와 관련되는 상담 및 지도와 유사한, 행정담당자 뿐만 아니라 민간의 동물진료소 등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발생 예방에 관한 식견에 정통한 사람에 의해서 넓게 행해져 기준의 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권고 및 명령의 적절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장검사 등은 복수의 사람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강습회나

사례 보고회의 등에 의해서 상담 및 지도를 실시하는 사람의 정확한 지식의 습득을 함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12조의 10가지 기준에 대한 지도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축사 및 기구의 세척 또는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가축 및 작업자의 옷과 신발 등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

본 규정은 가축의 사육 환경에 전염성 질병의 원인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가축에 전파하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로를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축 소유주는 가축의 종류 및 용도, 사육 형태, 사육 규모, 축사의 구조 등을 근거로 해 일상의 사육관리의 일환으로서 축사 및 사육 관리에 이용되는 기구의 세척이나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작업복과 신발, 장갑 등의 세척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것들을 청결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육하고 있는 가축에 대해서도 솔질 등을 실시하는 것 이외에 필요에 따라서는 가축의 배치, 축사의 구조 등을 궁리하는 것으로써 청결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2) 축사에 출입하는 사람은 손, 작업복과 신발 등에 대해서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원인체가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독과 그 외의 조치를 취하는 것**

본 규정은 사람의 이동이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주요한 전파 경로의 하나이므로 축사에 출입하는 사람의 손, 작업복과 신발의 소독 등에 의해 원인체의 침입 및 만연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작업복과 신발 등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규정되고 있지만, 축사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소독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육 관리에 이용하는 기구 등에 대해서는 해당 축사 전용의 것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지만, 축사의부로부터 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구도 그때마다 소독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소독 등의 실시에 있어서 축사의 출입구 부분에 발담금소독조 및 손세척조를 설치하고, 작업복과 신발 등을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사료 및 물에 가축 및 쥐, 들새 등의 야생동물의 배설물 등이 혼입하지 않게 노력하는 것**

본 규정은 가축이나 쥐, 들새 등의 야생동물의 배설물 등에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원인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것들이 가축의 사료나 물에 혼입함으로써 가축이 감염원으로부터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축에 급여하는 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의 개선에 관한 법률이 정해져 있으며, 여기에는 “유해 물질 또는 병원 미생물에 의한 오염, 또는 이러한 혐의가 있는 사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관점에서 병원 미생물에 오염되어 있는 혐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축이나 야생동물의 배설물 등이 혼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사료에 야생동물의 배설물이 혼입하지 않게 노력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다. 가축에 급여하는 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물이 급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가축의 사육형태는 지극히 다양하고 축사내에서 사육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육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적당하다.

**(4) 다른 농장 등으로부터 가축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축을 도입함으로써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가축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 할 때까지 다른 가축과 접촉시키지 않게 하는 것**

건강증명서의 경우 EU에서 배포한 서식이 본 규정은 가축의 이동이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주요한 전파 경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도입 가축으로부터 사육하고 있는 가축으로의 전염성 질병이 만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입 가축의 사육에 대해서는 격리 축사 또는 빈축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최소한 독립된 사육 구획의 이용, 방화벽의 설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사육에 이용하는 기구 등에 대해서도 전용의 것을 준비하는지 또는 겸용으로 하는 경우에 따라서 소독 등을 철저히 하는 것 이외에 도입 가축과 관련되는 작업을 마지막으로 하는 등의 조치도 중요하다.

본 규정에 있어서의 「가축에 이상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수의학적 식견에 근거해 진단하는 것은 아니고, 가축 소유주가 일상의 사육 관리로 얻을 수 있는 통상의 가축 상태에 비추어 보고, 이것과 다른 것이 없는 것도 포함한다.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기까지 필요한 지속기간은 도입한 가축의 종류, 성별,

연령 등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되지만 최소한 수송에 의한 스트레스 등의 영향이 배제되어 해당 가축의 원래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까지를 일반적인 규칙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 가축의 이상이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21조의 기준 8의 규정대로 동물진료소의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5) 다른 농장 등에서 출입자가 함부로 축사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농장 등을 출입한 차량이 농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소독에 노력하는 것**

본 규정은 사람과 가축 및 관련 물건이 농장 밖으로 나가거나 사료의 반입 등에 사용되는 차량이 다른 농장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농장 내부에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원인체를 반입하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전파 경로를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축 및 그 배설물 등에 접촉하여 또는 접촉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축사의 출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출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21조 기준 2에 근거하여 손, 작업복과 신발의 소독 등의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원인체의 침입을 막을 필요가 있다. 다른 농장 등에 들어간 차량에 대해서도 소독 등의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경우에 흙 등이 부착하고 있을 우려가 있는 타이어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차량의 소독 방법으로는 차량의 종류, 출입의 빈도 등을 감안해 차량 소독조를 이용한 방법,

분무기에 의해 소독액을 분무하는 방법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축사의 지붕 또는 벽면에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리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창문, 출입구 등의 개구부에 철망, 그외의 설비를 마련하여 쥐, 들새 등의 야생동물 및 파리, 모기 등의 해충의 침입의 방지에 노력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제거하는 것**

본 규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는 쥐, 들새 등의 야생동물 및 파리, 모기 등의 해충이 개입되고, 그 원인체가 축사내에 침입할 수 있으므로 이 전파 경로를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축사의 파손 부위를 수선하는 것과 동시에 개구부에 철망 등을 마련함으로써 축사내부로의 침입을 방지하고, 또한, 쥐, 파리, 모기 등이 축사내부에 정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이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가축의 사육형태는 지극히 다양하고, 축사내에서 사육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육 상황에 따라 이러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7) 가축을 다른 농장 등에 출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축이 이동함으로써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원인체가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가축의 건강 상태를 확인 하는 것**

본 규정은 가축의 이동에 수반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전파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출하시에 가축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규정에 「건강 상태를 확인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수의학적 식견에 근거해 건강한 취지의 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가축의 소유주가 일상의 사육 관리로 얻을 수 있는 통상의 가축 상태에 비추어 보고, 이것과 다른 것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덧붙여 이상이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21조 기준 8의 규정대로 동물진료소의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8) 가축의 이상을 가능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가축 건강관리에 노력하고, 이상이 인정 되었을 경우에는 동물진료소의 진료를 받아 지도를 요구하는 것**

본 규정은 가축 질병의 조기발견에 의해 초기 단계에 적절한 치료와 조기회복을 통해서 사육하는 가축의 건강을 유지하여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발생 예방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전염성 질병의 조기발견을 통해서 질병이 만연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일상의 사육 관리 중에 항상 가축의 건강상태에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이상이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동물진료소의 진료를 받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

가축의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동물진료소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가축의 이상을 조기에 파악하는 관점으로부터 전염성 질병을 포함한 가축 질병마다 이상의 경향에 대해서 가축 소유주가 필요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 외 필요한 경우」란, 가축의 위생관리 방법으로 불명확한점이 있었을 경우 등을 상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동물진료소의 지도를 요구해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는 관점에서 가축의 진료를 실시한 동물진료소는 그때마다 해당 가축의 소유주가 언제부터 이상을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확인 해 이상을 인정하고 나서 진료를 요구하기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례를 반복하는 일이 없게 필요한 상담 및 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가축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과밀상태로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것**

본 규정은 단일의 사육 구획에 가축을 과밀상태로 사육했을 경우에 가축이 과대한 스트레스를 받아 감염 방어기능이 저하하는 것, 동거하는 가축과의 접촉의 기회가 증가하는 것 등에 의해서 전염성 질병을 포함한 질병의 발생을 유지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과밀상태로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다」란 일정한 사육 밀도를 정해 해당 사육 밀도로 사육하는 것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과대한 사육 밀도에 의해서 호흡기 질병의 발생이 다발하는 등의 건강 이상을 야기하지 않게 사육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과밀 사육으로 인한 가축의 건강에 이상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적절한 상담 및 지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절한 사육 밀도는 축종마다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온도, 습도 및 환기의 상황에 의해 다른 것으로부터 가축의 소유주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21조의 기준 8의 규정에 따라 일상의 건강관리에 노력하는 가운데 적절한 사육 밀도를 파악하도록 상담 및 지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10) 가축 전염성 질병 발생의 예방에 관한 지식의 습득에 노력하는 것**

본 규정은 가축 소유주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지식의 습득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위생관리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규정은 위생관리방법에 대해 규정된 것이지만 축종별 다양한 사육 형태의 가축소유주를 대상으로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를 일률적으로 수치화하는 것 등의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가축 소유주가 적절히 기준을 준수하여 농장의 현상에 의한 위생관리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가축의 소유주가 필요한 지식의 습득을 도모해 가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고, 그것을 위한 상담 및 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가축 소유주가 습득해야 할 지식으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사료 및 사료 첨가물의 성분 명세서 등에 관한 법률, 동물용 의약품 사용의 규제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주의 및 세척에 관한 법률,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배설물의 관리의 적정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소해면상뇌증(BSE) 대책 특별조치법 및 소의 개체 식별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있으며, 가축 소유자는 이러한 법률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호에 계속)